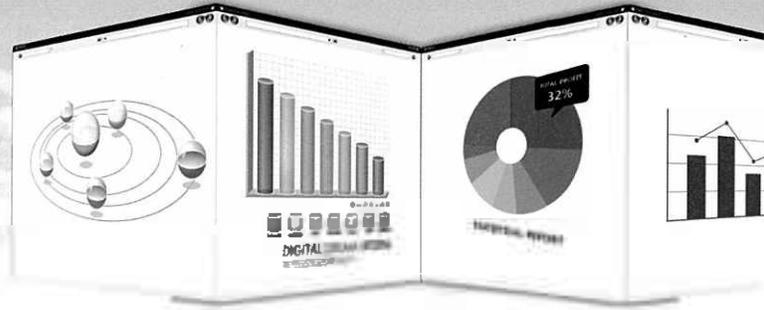


# 2013

## 달라지는 주요축산정책

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.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새해에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·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.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'2013년부터 농림수산식품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' 에서 발췌·정리하였다.



###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'13~'16년)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

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,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,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 등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 그리고,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.

(단위 :㎡)

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				
규모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시기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소	1,200 초과	600 초과~1,200	300 초과~600	50 초과~300
돼지	2,000 초과	1,000 초과~2,000	500 초과~1,000	50 초과~500
닭	2,500 초과	1,400 초과~2,500	950 초과~1,400	50 초과~950
오리	2,500 초과	1,300 초과~2,500	800 초과~1,300	50 초과~800

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㎡, 돼지 등 50㎡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  
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·돼지·닭·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·가금류

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 > 정보광장 > 법령정보 >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

###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

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'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'을 추진할 계획이다.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%임을 고려할 때,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 시 약 12~15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700억 원(3%, 2년 상환)

(참고)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lfaif.go.kr)에 별도 공지 예정 - 농림수산식품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

###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
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. 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('13), 육계('14), 한·육우 및 젖소('15)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.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 된 축산업을 영위하고,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.

(참고) 농림수산식품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